

『동(洞) 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 출신 신동원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605호

「동(洞)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건의안의 제안 이유는

「예비군법」에서는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
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여,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또는 자치구와는 별개로 독립된 동(洞) 단위의
방위협의회(이하 “동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재하여 국가 또는 상위 지방자
치단체의 지원이 불가능함으로 운영지원이 가능하도록 국
방부가 방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세칙에 정
하도록 촉구하는 건의를 하고자 함입니다.

-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예비군법 시행령」에서는 방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의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규칙 제정을 통한 동방위협의회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에 법정 기구인 동(洞) 단위의 방위협의회는 정상적인 운영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한 촉구 건의안의 취지를 헤아려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